

소규모 제조업체 재해예방 집중 지원

소규모 제조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동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유일하게 증가했다.”라며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지원, 근로자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 업종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만 곳으로,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선정된 사업장에 기술지원 대행요원을 파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흔히 발생하고 있는 김김·끼임, 떨어짐, 넘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울러 산업용 기계 및 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예비검사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사업주의 검사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의 재해예방 사업에서 소외됐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데다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각종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재해자 95,806명 중 30,919명(32.3%)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재해율을 보면 지난해 평균재해율이 0.71%인 것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보다 2배 높은 1.59%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폐업이 잦으면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동안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더 쉽게’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결



과표가 외국어로 표기되며, 또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건강진단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했다. 해당어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아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등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해 ‘3기간 통역시스템’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중에도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3기간 통역 시스템(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이란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3명이 동시에 같은 유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다. 이 중에서는 취약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주요 취급공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하고, 취급량 및 종사근로자수가 많은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정에서의 급성중독물질 노출경로를 파악,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작업방법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시에 공정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선정한 10대 화학물질과 공정을 살펴보면, △톨루엔(배합, 인쇄·코팅, 도장) △트리클로르에틸렌(세척, 코팅, 함침) △디메틸포름아이드(코팅, 침지, 도장·도포) △메틸에틸케톤(혼합, 인쇄, 접착) △디이소시아네이트(반응, 도장, 발포) △노밀헥산(세척, 혼합, 추출) △크실렌(세척, 도장·도포, 희석·혼합) △스티렌(배합, 적층, 도장) △이소프로필알콜(혼합, 인쇄, 세척) △메틸이소부틸케톤(혼합, 인쇄, 도장·도포)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10대 화학물질은 급성중독물질로써 그 간 직업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주요 3대 공정은 급성중독물질별로 직업병이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노출위험이 큰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0대 급성중독물질별 3대 공정에 맞는 전문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구성

국토해양부가 7월 25일 발생한 의정부경전철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 유사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안전사고의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사고조사위를 발주기관 차원에서 조직한 적은 있지만 국토부가 직접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처벌에 중점을 둔 경찰 및 노동부의 조사와는 달리 기술적 차원에서 사고경위와 원인을 찾는데 주력한다. 이번에 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면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도서,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실사하고, 그 결과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안전보건 관리 자가진단 시스템 마련

사업주·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 의식이나 관리체계 등을 인터넷으로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8월 1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자신 또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체크해 볼 수 있는 ‘e-자가진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 설문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 수준이나 문화,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른 참여자의 누적된 평점을 바탕으로 진단참여자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과 인식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단 점수와 등급 등이 그래프로 표시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e-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회사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직원 돌연사한 한국타이어 유죄”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강두례 판사는 지난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 공장장(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장장 정모씨(48)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연구개발부문 김모 사장(64)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모씨(53)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